부산시민공원(송상현광장) -

# 시설물 사용허가(대관) 지침



## 부산시민공원(송상현광장) 시설물 사용허가(대관) 지침

제정 2014. 4. 7. 개정 2020. 5.20. 개정 2023. 3.15.

## 제1장 총칙

### 제1조(목적)

이 지침은 부산시민공원(이하 "공원"이라 한다.) 및 송상현광장(이하 "광장"이라 한다.) 내 이용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 기준을 정립하고, 공원과 사용자가 상호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물 운영과 문화예술 창달함을 목적으로 한다.〈2020.05.20.개정〉

#### 제2조(용어의 정의)

- ① 사용허가라 함은 전시, 연습, 행사 등과 이와 직접적인 관련 부대행사 등을 위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공원(광장) 내 시설 및 설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
- ② 사용자라 함은 제1항의 사용허가 절차를 통해 공원(광장)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.

### 제3조(사용허가 기준 및 범위)

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제1조에 따른 사용허가시설은 공원 17개소, 광장 3개소이며, 사용요금(부가세별도)은 다음과 같다.〈2023.3.15.개정〉

## ① 공원 사용허가 시설(부가세 미포함)

	구 분		면적 (m²)	단가 (시간/원)	대관요금 (원)	대관기준
	문화	갤러리1	122.8	130	15,960	
   갤	예술촌	갤러리2	120.7	130	15,690	■ 토·일·공휴일은
러	시민	미로전시실	409.5	130	53,230	1일 사용료의 20%가산
리	사랑채	백산홀	710.7	130	92,390	■ 1일 전시시간(09:00~22:00)
	다솜관	다솜갤러리	216.4	130	28,130	
	다솜관	동백꽃방	149.2	3/270	40,280	
세	니合선	고등어방	67.2	3/270	18,140	■ 토·일·공휴일 및 야간은
	시민 사랑채	장영실방	77.6	3/270	20,950	사용료의 20%가산
나		안용복방	142.8	3/270	38,550	■ 기본 사용시간 초과 시 매시간 기본 사용료의
실		박재혁방	51.9	3/270	14,010	20% 가산
		박차정방	86.7	3/270	23,400	
연 습	문화	연습실1	120.7	150	18,100	■ 토·일·공휴일 및 야간은 1일 사용료의 20%가산
실	예술촌	연습실2	120.7	150	18,100	■ 1일 사용시간(09:00~18:00)
공	흔적	덕극장	320	150	48,000	■ 토·일·공휴일 및 야간은
연	방문자센터	더야외공연장	390	150	58,500	1일 사용료의 20%가산
장	백	산홀	710.7	150	106,600	■ 1일 사용시간(09:00~18:00)
잔 디	하야리이	<b>아</b> 잔디광장	45,000	2/20	900,000	■ 토·일·공휴일 및 야간은 사용료의 20%가산 ■ 기본 사용시간 초과 시 매시간 기본 사용료의
광 장	다	솜관	7,000	2/20	140,000	■ 기본 사용시간 초과 시 매시간 기본 사용료의 20% 가산

잔디광장/국립아트센터 행 삭제 <2023.3.15.개정>

## ② 광장 사용허가 시설(부가세 미포함)

	구 분	면적 (m²)	단가 (시간/원)	대관요금 (원)	대관기준
마	문화마당 (선큰광장, 잔디스탠드)	10,070	1/10	100,700	■ 토·일·공휴일 및 야간은
	다이나믹 부산마당 (잔디광장, 포장광장)	15,750	1/10	157,500	사용료의 20%가산 미 기본 사용시간 초과 시 매시간 기본 사용료의
당	역사마당 (포장광장)	8,920 (6,160)	1/10	89,200	메시진 기 <del>간</del> 지승묘의 20% 가산

#### 제4조(사용허가의 구분)

- ① 사용허가는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사용허가, 수시사용허가로 구분한다.
  - ② 정기사용허가는 상ㆍ하반기 전시일정 확정을 위해 공원(광장)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행한다.
- ③ 수시사용허가는 정기사용허가 이후 잔여일정 발생 시 수시로 신청을 받아 허가하며, 사용하려는 자는 "시설물 사용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"(별지 제1~3호 서식)를 사용하려는 날의 7일전까지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.

## 제2장 사용허가(대관) 절차

#### 제5조(사용허가 신청)

- ① 제3조의 시설물을 사용허가 받고자 하는 자(이하 "신청인" 이라한다.)는 부산시민공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용시설과 기간을 지정하여 직접 예약 진행할 수 있으며, 신청 시 사용허가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와 계획서 (별지 제2호 서식), 개인정보 이용동의서(별지 제3호 서식) 및 필요시 관련자료(주요경력, 실적자료 등)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.
- 단, 홈페이지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문이나 유선으로 접수할 수 있다.<2020.05.20.개정>
- ② 사용허가신청 시 사용허가기간은 준비·진행·철수기간을 포함하며, 갤러리는 최소 7일 이상을 워칙으로 한다.

## 제6조(사용허가 승인)

① 공원(광장)은 사용허가신청 마감 후 30일 이내 이를 심의하고, 심의

종료 후 7일 이내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.

- ② 공원(광장)은 사용허가를 승인함에있어 효율적인 시설물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사용허가기간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.
- ③ 사용허가승인 통보를 받은 자는 공원(광장)이 지정하는 일자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, 지정된 기일까지 사용료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포기로 간주하며, 사용허가 승인을 취소한다.

#### 제7조(사용허가 승인 기준)

- ① 사용허가 승인 기준은 공원(광장)이 시설물 운영 방침과 사용허가 신청인의 신청 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.
- ② 사용허가일수 및 일정경합시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  - 1. 국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 주관의 공익 또는 공공성 목적의 사용허가
  - 2. 순수 예술인 및 예술단체 또는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용허가
  - 3. 공원(광장)의 전시허가기준은 기획전시, 공동기획전시, 단체전, 개인전 순으로 한다. 단, 개인전이 단체전보다 예술적 성과와 전시효과에서 우세 할 경우에는 개인전을 우선할 수 있다.
- ③ 수시사용허가의 경우에도 위의 각호에 준하여 사용허가를 한다.
- ④ 참여의 정원 내 시민꽃밭 승인 및 운영기준은 별지4호와 같다.

## 제3장 행사 및 대관 등 진행

## 제8조(진행의 정의)

진행이라 함은 준비기간 및 철수기간을 포함한 사용허가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제반사항을 말한다.

#### 제9조(진행 시 유의사항)

- ① 사용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용허가일 이전에 공원(광장)에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시설설비 등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사용자는 물론 설치제작자가 설치방안 등 제반사항을 공원(광장)과 협의하여야 하며, 공원(광장)은 공원(광장)운영에 중대한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중지할 수 있다. ② 사용자는 승인받은 내용 이외의 별도 부대행사(정치, 특정 종교행사, 상품판매행위 등)를 개최할 수 없다.
- ③ 사용자는 조명 등 설비를 이동 혹은 제거하거나 추가 설치하는 경우, 공원(광장)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④ 안내원의 복장은 이용객과 구분된 통일되고 단정한 복장이어야 하며, 안내원 교육은 공원(광장)과 협의하여 시행해야 한다.
- ⑤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중 관람객 입장현황을 일자별로 공원(광장)에 통지하여야 한다.

## 제10조(광고, 홍보물의 협의)

- ① 사용자는 필요한 각종 광고, 홍보물 제작 시 반드시 공원(광장)과 사전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홍보용 현수막은 공원(광장)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규격에 맞게 설치할 수 있으며, 배너 설치는 질서유지를 위해 사용허가시설 주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.

## 제11조(방송, 판촉, 부대행사 등)

① 사용자는 공원(광장)에서 행해지는 전시, 행사 등을 녹화 또는 방송을 하고자 할 때는 공원(광장)이용객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공원(광장)과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- ② 부대행사(세미나, 퍼포먼스, 기타 판촉 행사 등)는 사용허가와 관련된 행사에 한하며, 사용자가 이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원(광장)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이미 승인된 장소 이외의 곳을 사용할 때에는 별도 장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③ 사용자는 전시작품, 행사 응용상품 등을 판매하거나 협찬 및 후원사상품을 전시할 수 없다. 다만, 사용허가신청 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원(광장)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## 제4장 사용허가 신청 제한 및 자격정지

#### 제12조 (사용허가 신청 및 승인 제한, 취소, 신청자격 중지)

- ① 공원(광장)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 허가 신청을 받지 않는다.
  - 1.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나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
  - 2. 공원(광장)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미풍양속을 해하는 등 공원(광장)의 유지관리상 부적절한 경우
  - 3. 바자회 등의 상품홍보, 판매행사, 음식물조리, 화기사용 등을 수반 하는 경우
  - 4. 시민공원 내 정치적 행사<2023.3.15.개정>
  - 5. 시민공원 내 종교행사 및 특정단체 행사 등의 경우(단, 부산광역시 요청이 있을 시 승인할 수 있다.) 〈2023.3.15.개정〉
  - 6. 제3항에 의해 신청 자격이 정지 중인 자의 신청
  - 7. 체육행사 등 시설물(잔디포함) 손상이 우려되는 행사
    - ※ 하아리이잔디광장은 토・일・공휴일 다수의 공원(광장)이용객을 위해 기급적 장소사용 불허
  - 8. 본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

-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원(광장)은 사용허가승인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.
  - 1. 사용허가승인 후 사용허가신청서의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
  - 2. 사용허가승인 후 제1항의 사항이 확인되었을 때
  - 3. 공원(광장)이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
  - 4. 이 지침을 위반하여 사용허가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-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하여 공원(광장)은 그 행위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하의 사용허가 신청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.
  - 1.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
  - 2. 이 지침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
  - 3. 사용허가취소를 원하는 정기신청 사용자가 사용일로부터 최소 60일 이전에 사용허가취소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(단, 사용허가기간이 30일 이상인 장기사용허가의 경우는 최소 90일 이전에 사용허가 취소 신청)

## 제5장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 감면

## 제13조(사용허가취소)

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취소신청서를 공원(광장)에 제출해야 하며,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다.

반환 사유	반환시점	반환 사용료
① 시의 행사 또는 공원(광장)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	사용개시일 전	납부한 사용료 전액
②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	사용개시일 후	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
③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	사용개시일 전	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
요청하는 경우	사용개시일 후	사용료의 100분의 10과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

#### 제14조(사용료 감면)

-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장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  - 1.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 · 점용하는 경우
  - 2.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주최하는 민족적·종교적 의식과 문화· 체육행사를 하는 경우
  - 3. 영구히 보존할 사적 또는 현저한 공이 있는 자의 기념비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
  - 4.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도시공원(광장) 또는 녹지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기간
- ② 시장은 그 밖의 사유로 사용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.
- ③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공원(광장)에 제출하여야 한다.

## 제6장 변경금지 및 사용승인 해지

## 제15조(사용권 양도 및 전대금지)

사용자는 시설물 사용권한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. 다만,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사용허가승인 후 공동주최, 주관 및 후원 등 변동사항 발생 시는 공원(광장)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.

### 제16조(일정 및 내용 변경금지)

- ① 사용자는 전시 및 행사내용 등을 공원(광장)이 승인한 내용과 달리할 수 없다.
- ② 사용자측 사정에 의해 내용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일 전 공원(광장)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, 공원(광장)은 내용변경이

대관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

③ 사용일정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 단, 공원(광장)이 별도로 인정하여 사용일 전에 공원(광장)의 승인을 얻은 경우와 공원(광장)사정에 의해 사용자와 협의하여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#### 제17조(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)

- ① 사용자는 현수막·부스 등을 설치하거나 외부로부터 특별한 설비를 반입하는 경우 공원(광장)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제1항에 의한 설비는 행사 종료 후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, 설치 및 철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, 사용자는 설비의 반입 및 철수로 인해 공원(광장)의 기존 시설물, 설비에 손상을 가져 온 경우는 변상하여야 한다.
- ③ 공원(광장)은 사용자가 반입한 설비의 철수를 지연할 경우, 강제 철거 할 수 있으며,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이때 발생한 설비의 손상에 대하여 공원(광장)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④ 사용자는 전시장 내에 상업적 목적의 어떠한 설치물도 설치할 수 없다.
- ⑤ 공원(광장)내 모든 사용허가시설(물)에는 전시개막식 및 각종행사 등에 따른 음식을 조리할 수 없다.

## 제7장 화재예방 및 전시장 관리의무 사항

## 제18조(화재예방 및 안전관리)

① 공원(광장)은 사용허가시설, 설비의 관리유지, 입장통제, 안전지도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.

-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중 공원(광장)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, 특히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.
  - 1. 기본시설 외 간이칸막이 등 별도의 실내건축물 또는 작품설치와 관련된 모든 반입물품들은 소방법에 의한 방염처리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며 방염처리 확인필증을 받은 물품만 설치가 가능하다.
  - 2. 휘발유, 신나, LPG가스 등 인화성이 있는 발화물질 반입을 일체 금지하며,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원(광장)의 승인을 받은 후에 반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.
  - 3. 사용자는 발화물질 사용 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작업장 안전 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-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.
  - ④ 사용자는 공원(광장)이 정하는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.

## 제19조(관리의무 및 손해배상)

- ① 공원(광장)은 사용허가기간 중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, 물적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② 사용자는 공원(광장)이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,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는 공원(광장)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한다. 이 경우 사용자는 공원(광장)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.
- ③ 사용허가기간 중 사용자가 반입한 작품 및 설비 등에 관한 관리책

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, 공원(광장)은 진행시간 이외의 시간과 휴장일에는 외부보안업체의 일반적인 방범과 시스템 경비만을 제공한다.

- ④ 사용자는 설치했던 시설물과 장비는 사용허가기간 내에 철수하고 사용허가 이전의 상태로 워상 복구해야 한다.
- ⑤ 사용허가기간 중 발생하는 쓰레기 폐기를 위한 수수료는 실비로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.

## 제8장 기타사항

#### 제20조(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)

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지침의 해석에 관하여는 공원(광장)의 관련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.

#### 제21조(지침 위반 시의 책임)

이 지침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,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지침은 2014년 5월15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20년 5월20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2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## 【별지 제1호 서식】제5조 관련

## 시설물 사용허가(대관) 신청서

사	단체 명	전화번호						
- ^1 - 용		팩스번호 						
자	성 명	주소 -						
	생년월일	E-mail						
전/	시(행사)명							
)	사용기간	20 년 월 일( )요일 : ~ 20 년 월 일( )요일 :						
		갤러리 □예술촌갤러리① □예술촌갤러리② □다솜갤러리 □백산홀 □미로전시실						
.,		연습실 □예술촌연습실① □예술촌연습실②						
사   용   시	기본시설	세미나실 □동백꽃방 □고등어방 □안용복방 □박재혁방 □박차정방						
설		공연장 □흔적극장 □백산홀 □방문자센터야외공연장						
		광 시민 □하야리아잔디광장 □아트센터부지광장 □다솜광장						
		장 <sup>송상현</sup> 광장 □문화마당 □다이나믹부산광장 □역사마당						
사	준비	20 년 월 일 시 분 ~ 20 년 월 일 시 분( 시간)						
용 기	전시 및 행사	20 년 월 일 시 분 ~ 20 년 월 일 시 분( 시간)						
간	철수	20 년 월 일 시 분 ~ 20 년 월 일 시 분( 시간)						
	입장료							
য়	관람범위							
Γ	부산시민공	_ 공원 관리·운영 조례」 및「부산광역시 송상현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						
따라	<b>가</b> 위와 같이	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.						
신청인 주소:								
		성명: (서명 또는 인)						
	전화:							
부수	산시민공원기	장 귀하						
붙인	붙임 : 전시(행사)계획서 1부							

## 【별지 제2호 서식】제5조 관련

## 전시계획서

#### 1. 사용자

기관명(단체명)		주소		
성명(대표자)		<u>주민등록번호</u>		
	성 명	Fa	ax 번호	
실무자 연락처	전 화	e-mail 주소		
E 171	핸드폰	홈페이지 주소		

#### 2. 전시 세부 계획

전시회명						
전시목적	※ 가능한 상세히 기재 (사용허가 심사시 참고사항)					
전시내용	` ′	시( 점), 서( 점), 동양화( 점), 서양화( 점), 졸업작품전( 점) 기타미술작품( 점)				
	전시기간	20 년 월 일(:)~20 년 월 일(:)				
전시실 사용기간	작품반입	20 년 월 일(:)~20 년 월 일(:)				
, , , , ,	작품반출	20 년 월 일(:)~20 년 월 일(:)				
전시 단체	주 최	주 관				
	후 원					

※ 잘못 작성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 년 월 일

기관(단체)명:

주 소:

신 청 인: ① 또는 서명

## 행사(공연) 계획서

#### 1. 사용자

기관명(	단체명)	주소
성명(대표자)		<u>주민등록번호</u>
시민기	성 명	Fax 번호
실무자 연락처	전 화	e-mail 주소
	핸드폰	홈페이지 주소

## 2. 행사(공연) 세부 계획

행 사 명							참석인원		명
행사성격	행사 / 공연(	합창, 합주,	독창	, 독주, 국악, 두	P용, 연=	구, 뮤기	시컬, 기타공연)		
행사 1. 현	준비작업	20 년	월	일(:)~	20 년	월	일(:)		
(공연) <mark>2. 약</mark>	면습(리허설)	20 년	월	일(:)~	20 년	월	일(:)		
(ㅎ 년) 일시 <mark>4 =</mark>	본 일정	20 년	월	일(:)~	20 년	월	일(:)		
크 <sup>기</sup> 4. 7	정리(철수)	20 년	월	일(:)~	20 년	월	일(:)		
행사(공	연) 장소								
개최 목적		※ 가능힌	· 상서	히 기재 (사용	허가 심	사시	참고사항)		
		시간		행사내용				비고	
		: ~	:						
프로그	램 내용	: ~	:						
(첨부로 ١	대체가능)	: ~	:						
,		: ~	:						
	: ~	:							
기타사항									

※ 행사(공연)계획 및 내용을 잘못 작성해서 발생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주시고, 사용자(단체) 대표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 년 월 일

기관(단체)명 :

주 소:

신 청 인: ① 또는 서명

## 연습(세미나) 계획서

#### 1. 사용자

기관명(단체명)		주소 -
성명(대표자)		<u>주민등록번호</u>
시민기	성 명	Fax 번호
실무자 연락처	전 화	e-mail 주소
	핸드폰	홈페이지 주소

#### 2. 연습(세미나) 세부 계획

행 사 명				참석인원	명
행사성격	연습(합창, 합 교육, 세미나,		주, 국악, 무용, 연극, 뮤지컬,	기타공연)	
1. 준	비작업	20 년 월	일 일(:)~20 년·	월 일(:)	
행사 2. 연	[습(리허설)	20 년 월	일(:)~20 년 육	월 일(:)	
일시 3. 본	L 일정	20 년 월		월 일(:)	
4. る	]리(철수)	20 년 월	일(:)~20 년 육	월 일(:)	
행시	나 장소				
행시	나 목적	※ 가능한 ^	상세히 기재 (사용허가 심사	시 참고사항)	
		시간	행사내용		비고
		: ~ :			
프로그	그램 내용	: ~ :			
(첨부로	대체가능)	: ~ :			
		: ~ :			
		: ~ :			
기타사항					

※ 연습(세미나)계획 및 내용을 잘못 작성해서 발생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주시고, 사용자(단체) 대표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 년 월 일

기관(단체)명:

주 소:

신 청 인: ① 또는 서명

#### 【별지 제3호 서식】제5조 관련 <2020.05.20.개정>

####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동의서

부산시민공원은 시설물 대관신청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,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.

- 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부산시민공원 시설물 대관신청 및 대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
- 2. 수집 · 이용할 개인정보
  - 필수정보 :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
  - 선택정보: 이메일, 팩스, 통장사본(필요시) 등
- 3. 개인정보의 보유 · 이용 기간 및 파기
  - 이용 목적이 달성된 이후 5년간 관리
- 4.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. 단, 동의 거부 시 에는 대관 신청이 가능하지 않고 행사 진행 등의 서비스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. (대관 신청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필수 정보는 미작성시 등록 불가)
- 5.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안내 부산시민공원 에서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
	위와	같이	개인정보의	수집.	이용에	대하여	동의하십니까?
$\Box$	11-1			ı 🗀 ,	10 1		0 0 0 1 0 1 1 7 1 .

신 청 인		동의함 🗌		동의하지 않	<b>}음</b> □	
□ 본인은 상기	] 내용과 같이	개인정보를	수집・이용	하는데 동의합니	다.	
	년	월	일	신청인		(서명)

### 【별지 제4호】제7조 제4항 관련

## 부산시민공원 참여의 정원 내 시민꽃밭 승인 및 운영기준

제1조(제정목적 및 적용범위) 이 규정은 시민들의 정서함양, 가족화목, 체험학습 등에 기여하기 위해 부산시민공원 참여의 정원 내에 조성하는 시민꽃밭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, 『시민꽃밭』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.

제2조(사용자 선정방법) ① 부산시민공원 참여의 정원 내 시민꽃밭 사용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시민꽃밭 사용을 신청한 인원이 허가대상 구역 수 보다 많을 경우, 사용자 선정은 공개추첨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.

제3조(신청자격) 참여의 정원 내 시민꽃밭을 사용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개모집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소(소재지)를 두고 있어야 한다.

제4조(사용면적) 참여의 정원 내 시민꽃밭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개인의 경우 1인당 9㎡(1개 구역), 단체는 1단체당 90㎡(10개 구역)이내로 한다.

제5조(사용기간) 참여의 정원 내 시민꽃밭 사용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2014년도는 부산광역시에서 따로 정한다.

제6조(사용료) 참여의 정원 내 시민꽃밭의 사용료는 부산시민공원 관리·운영조례에 의거하여 부산광역시(부산시설공단)가 정한다.

제7조(의무) ① 참여의 정원 내 시민꽃밭 사용자로 선정된 개인 또는 단체는 본 규정의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- ② 시민꽃밭 사용자(단체)는 부산광역시(부산시설공단)로부터 고지서를 발급받아 지정된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.
- ③ 시민꽃밭 사용자(단체)는 초화를 심고 가꾸는 작업을 연중 성실하게 수행하여, 꽃이 시들어 죽거나 잡초가 자라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④ 시민꽃밭 사용자(단체)는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허가받은 구역에 대한 원상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.

제8조(재배식물 제한) 시민꽃밭 사용자(단체)는 허가받은 구역 내에 초화를 심고 가꾸는 작업만 가능하며, 농작물은 심을 수 없다. 특히 넝쿨식물, 키 큰 식물 등 다른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식물은 재배하지 못한다.

제9조(사용자 준수사항) ① 참여의 정원 내 시민꽃밭 사용자(단체)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가.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
- 나.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
- 다. 면적을 임의 조정하여 확대하는 행위(접근통로 및 타인 공간 침범)
- 라. 초화재배에 비닐피복, 농약 등을 사용하는 행위
- 마. 지정된 구역 이외에 출입하는 등 타인에게 반감을 주는 행위
- 바. 페기물, 오물, 타목적을 위한 자재 등 초화재배에 필요하지 않은

물건을 반입하거나 흙을 반출하는 행위 등

② 시민꽃밭 사용자(단체)는 주변을 항상 청결히 하고 발생된 쓰레기는 되가져가야 하며, 작업도구(모종삽, 호미 등)는 직접 준비해야 한다.

제10조(사용권리 취소·회수) ① 시민꽃밭 사용자(단체)가 본 규정의 제7조(의무), 제8조(재배식물 제한), 제9조(사용자 준수사항)를 지키지 않거나 기타 시민꽃밭 운영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, 부산광역시(부산시설공단)는 즉시 사용권리를 회수할 수 있다.

- ② 부산광역시(부산시설공단)는 시민꽃밭 사용자(단체)의 권리를 취소·회수할 경우에는, 이러한 결정을 당해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- ③ 부산광역시(부산시설공단)는 정당한 사유 발생으로 인해 시민꽃밭 사용자(단체)의 권리를 취소·회수하였을 경우, 차순위 대기자 등에게 해당 구역을 사용 허가할 수 있다.

제11조(사용료 반환) 시민꽃밭 사용자(단체)로 선정된 개인 또는 단체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권리를 포기하고 사용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, 부산광역시(부산시설공단)는 부산시민공원 관리·운영조례 제8조에 규정된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.